

게 시 판

■ 공 고

- 전파법시행령중개정령(안)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 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개정령(안)

■ 고 시

- 텔레비전자막방송에관한송신의 표준방식
- 기술계 · 기능직종사자중연구활동에 종사하는자

◎ 정보통신부공고 제 1996 - 115 호

전파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공고일 96. 12. 5)

1. 개정취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의 일환으로 현재 그 이용이 대중화되어 있는 이동전화 등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인하하고 소액납부자의 전파사용료 면제금액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무선국의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데 따라 그 대상 무선국을 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지원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의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데 따라 그 구체적인 대상을 이동전화, 주파수공용무선전화, 개인휴대전화 등으로 정함.
- 나. 현재 부과할 전파사용료가 1,000원 미만인 경우 이를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500원 미만인 경

우 이를 면제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 다. 이동전화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현행보다 25% 인하함.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1996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서울시 종로구 신문로1가 116)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것은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 전파기획과(전화 750-24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 통상산업부공고 제 1996 - 135 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공고일 96. 11. 18)

1. 개정취지

중소기업청의 설립에 따른 정부조직법령의 개정
에 따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동시행령이 정비되었고
(96.2.) 후속조치로 시행규칙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창업자가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장을 설립할
경우의 창업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개시일
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나.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하는 창업투자조합에 창업지
원자금으로부터 출자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 제출
하는 서류 및 승인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업
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창업투자조합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창업지원자금을
손실금으로 충당하고자 할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절차를 정하고자 함.

라.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항중 변경신청대상
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6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중소기업청장(참조 : 창업지원과장, 전화 : 503-
793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성
명), 주소 및 전화번호

◎ 통상산업부공고 제 1996-136 호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공고일 96. 11. 18)

1. 개정취지

중소기업청의 설립에 따른 정부조직법령의 개정
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이 정비되었고('96.2.) 후속조치로 시행규칙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함.

2. 주요내용

정부조직법령의 개정
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에서 중소기업청장으로 이관되는
사항에 대해 관련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1996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중소기업청장(참조 : 경영지원과장, 전화 : 503-
79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성
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정보통신부고시 제 1996-100 호

텔레비전자막방송에관한송신의표준방식

(고시일 96. 11. 16)

1. 주파수 대역폭

텔레비전 자막방송에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폭은 6M
Hz로 하며, 자막방송신호 반송파의 주파수는 텔레비전방
송의 영상신호 반송주파수로 한다.

2. 변 조

가. 자막방송 신호 반송파의 변조방식은 진폭변조

로 한다.

나. 진폭변조된 전파의 복사전력은 자막방송신호가 “0” 레벨에서 “1” 레벨로 변환하는 때에 감소하는 것으로 한다.

3. 동기신호

가. 동기신호는 수직동기펄스, 수평동기펄스, 동화펄스 및 칼라버스트로 구성된다.

나. 수평동기펄스의 주파수는 텔레비전 방송에 관한 송신의 표준방식(체신부고시 제1985-46호)제2항에 규정하는 색신호 부반송파 주파수의 455분의 2로 한다.

다. 수직동기펄스의 주파수는 수평동기펄스 주파수의 525분의 2로 한다.

4. 자막방송신호의 구성

가. 자막방송 신호의 형식은 진폭변조된 2진 NRZ 펄스로 한다.

나. 자막방송 신호의 단일펄스의 스펙트럼은 55%에서 100%까지의 Roll-off 특성을 갖는 Raised Cosine 필터와 같은 스펙트럼을 갖는 펄스파형이어야 한다.

다. 자막방송 신호의 진폭의 정상치는 “0” 레벨은 $0 \pm 2\text{IRE}$, “1” 레벨은 $50 \pm 2\text{IRE}$ 로 한다.

라. 클럭주파수는 수평주사주파수의 32배인 503,496.32Hz이어야 한다.

5. 데이터라인의 중첩위치

데이터라인은 주사선중 한글은 284라인에, 영어는 21라인에 중첩하는 것으로 한다.

6. 데이터라인의 구성

가. 데이터라인은 한 라인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총량

을 말한다.

나. 데이터라인은 클럭동기 13비트, 바이트동기 3비트, 첫째 데이터 8비트, 둘째 데이터 8비트로 구성되며 별표 1과 같다.

다. 한 데이터라인의 데이터 전송용량은 2바이트이다.

7. 표현방식

가. 자막데이터는 한글의 경우, 표현방식은 KSC-5601 완성형 코드방식을 사용하며, 한글은 16행에서 40행, 특수문자는 1행에서 2행, 영문 및 숫자는 3행, 복사음은 4행, 사용자 정의문자는 13행에서 15행을 사용한다.

나. 자막데이터는 영어의 경우 EIA-608 규격을 따른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과학기술처고시 제 1996-42 호

기술계·기능직 종사자중 연구활동에 종사하는자

(고시일 96. 11. 21)

기술계·기능직 종사자중 과학기술처장관이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한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부서, 연구실, 연구팀 등 연구담당 조직에 소속되어 연구수행에 필요한 실험장비 및 시설가동, 시험결과 분석 및 정리 등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기술계 기능직의 급에 상당하는 해당 직원